

## 행위 결과주의의 찬반논변 -윌리엄스의 행위자 통합성 비판을 중심으로-

박효종\* · 손경원\*\*

### I. 서 론

이론이란 혼란한 현상 속에서 단일한 질서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며, 도덕이론의 탐구, 즉 도덕철학적 탐구 역시 그러하다. 복잡한 도덕 현상을 관통하는 단일한 도덕원칙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근대 이래 도덕철학의 기본 흐름이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도덕의 복잡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C.E.Larmore, 1987), 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 있어 원칙의 윤리는 적어도 서구 도덕철학의 주요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원칙의 윤리는 행위의 옳음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궁극적 기본원칙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원칙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윤리이론들로 구분된다. 통상 양대 이론으로서 칸트적 의무론과 결과주의가 논의된다. 한편, 도덕철학적 탐구의 다른 주목할만한 특징으로는 논쟁을 통한 이론의 개선과 발전이 있다. 복잡다양한 도덕현상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기본원칙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기본원칙에 대한 수정을 통해 이전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며 마땅히 고려되어야 했던 인간 삶에서의 도덕의 요구들을 보다 포괄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개선된다. 따라서 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실사 특정 이론 진영내에서조차 단일한 도덕의 정의에 멈춰있지 않고 논쟁을 통해 변화되어가며 도덕 그 자체에 대한 탐구가 계속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논쟁 중심의 도덕 철학적 탐구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하며, 특히, 칸트적 의무론과 함께 원칙의 윤리의 한 축을 이룸에도 우리사회에서 도덕이론으로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결과주의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는데 있다.

결과주의는 ‘도덕은 세상을 모두에게 더 나은 곳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라는 자명한 문구에 기초한다. 따라서 결과주의는 행위 자체에서 옳고 그름을 찾지 않고, 행위의 결과의 견지에서 행위의 옳음이나 그름을 평가한다. 모든 도덕이론은 선(good)에 대한 이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대학원

론을 전제하며 선의 이해가 어떠한가에 따라 도덕이론의 옳음의 개념은 달라지게 된다. 결과주의 내에서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선의 이론을 제시하는 진영은 바로 공리주의이다. 쾌락주의나 복지주의로 알려진 공리주의에서의 선은 쾌락, 행복, 복리이다. 쾌락을 본래적 선으로 파악하기에 옳은 행위는 쾌락이나 행복을 극대화하는(maximizing) 행위이다. 행위의 옳음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행위가 산출한 쾌락에 있다. 이러한 옳음의 개념은 전형적으로 행위결과주의자의 옳음의 개념이며, 통상 행위자가 자신을 행위결과주의자로서 자처한다면, 행위자는 매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가능한 행위 상황들 중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최선의 상황을 위해 행위 할 경우에서야 옳은 행위를 수행했다고 정당화할 수 있다(D.McNaughton, 1998a : 603-604). 그런데 이러한 옳음의 개념에는 행위자 중립성(agent-neutrality)이 전제되어 있다. 결과주의 견지대의 선이나 가치는 각 행위자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독립적이다. 즉, 결과주의적 행위자는 비개인적(impersonal) 관점에서 행위가 산출할 선의 총량에 따라 행위자에게 허용가능한 행위들을 최선의 상태에서부터 최악의 상태로 서열화하며, 이에 따라 각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을 판정한다. 그러므로 결과주의의 특징을 명료하게 표현한다면, 결과주의란 선에 대한 행위자 중립적 설명을 제공하고, 그 선을 가능한 최고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이론이다(T.A.Jollimore, 2001 : 6-7).

이러한 행위 결과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상적이며 상식적 도덕 직관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행위결과주의는 행위자에게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는 요구를 하기에, 즉 행위자는 매순간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는 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 둘째, 모든 행위자에게 중요한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 예를 들면, 부모, 자식, 형제, 친구, 동료시민들에 대한 특수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행위결과주의는 행위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기도 하지만 너무나 허용적이기도 하다. 때때로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사기, 고문, 살인과 같은 행위를 금지나 제약(constraints)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D.McNaughton, 1998a : 604).

이러한 행위결과주의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널리 인정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비판에만 주목한다면, 행위결과주의 이론은 윤리이론으로서 너무도 취약한 이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세플러(S.Scheffler)가 지적하고 있듯이, 공리주의는 수많은 이론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서구 윤리학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존재해왔는데,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리주의의 기본 정신인,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는 행위를 하라'는 점 때문이다(1982 : 4). 이러한 공리주의의 특징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도전에 대응해가며 공리주의의 기본 특징을 살리고자 했고, 그 결과 공리주의 내의 다양한 여러 분과적 이론들이 주장되거나, 때로는 공리주의의 기본정신을 살리면서 취약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무론과 결합된 새로운 이론적 시도가 윤리이론으로서 등장하였다.

결과주의에 대한 앞서의 세 가지 비판은 공리주의의 탁월한 비판가인 윌리엄스(B. Williams)의 행위자 통합성(integrity) 비판과 연관된다. 윌리엄스는 만일 행위자가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행위한다면, 앞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질 ‘공리주의의 소극적 책임’(negative responsibility)의 강한 논지로 인해 개인의 통합성이 저해되거나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서 결과주의 진영 내에서 수정된 공리주의 이론인 레일톤(P. Railton)의 간접 행위공리주의가 제시되었으며,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 이론의 특성을 모두 지닌 세플러의 혼용이론(hybrid theory)이 대두되었다.

이 글은 앞서 말했던 바처럼 결과주의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교적 세플러의 입장에 서서 본 글의 전체적 구도를 진행시켜나가고 부분적으로 결과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응들에 대해 평가하겠지만, 가급적 비판과 대응의 각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서구 윤리학의 최근 흐름, 특히 의무론과 결과주의 이론<sup>1)</sup>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여기에서 의무론의 개념, 의무론과 결과주의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앞으로의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무론의 개념은 지나치게 개략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통상 우리가 현재 윤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칸트주의 윤리학에서 말하는 의무론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상식적 도덕이나 권리중심의 도덕이론의 광범위한 의무론에 부합한다. 이러한 의무론의 범위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의무론적 요소인 행위자 상대성(주관성, 개인적 관계, 행위자 중심 규제)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맥노튼이 정리한 의무론의 특징, 의무론과 결과주의의 차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D. McNaughton, 1998b : 890-891).

의무론은 구분되는 상이한 의무들이 있음을 주장한다. 결과주의와는 달리 결과와 무관하게 특정 행위들은 본래적으로 옳고, 어떤 다른 행위들은 본래적으로 그르다. 로스(W.D. Ross, 1930)처럼 일부 의무론자들은 의무들 중 가능한 많은 선을 행하라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의무론자들은 그러한 의무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며, 불운한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의무나 자신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많은 의무론자들은 적어도 두 가지 부류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가 개별 인간으로서 사회적 개인적 관계들로부터 나온 의무들이 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책임이 있고, 소속된 단체나 직장에 대한 의무, 채권자의 의무, 약속을 한 사람은 약속 지키기의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종류의 의무는 일반적 금지나 제약(constraint)의 형식을 취한다.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해도 살인하거나 고문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의무론은 행위결과주의와 대조된다. 행위결과주의는 행위자의 정체성에 따라 그 행위자의 의무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결과주의는 모든 행위자를 중립적으로 전제하고, 행위자에게 가능한 결과들 중에서 모든 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를 할 것이라는 의무가 있다(이점에서 결과주의는 윤리적 이기주의와 차이가 있다). 의무론은 대조적으로 행위자를 참고하는 일(reference to the agent)이 의무의 규명에서 배제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이점은 특정 사회관계에서 나온 의무의 경우에서 분명하다. 나는 ‘이사람’을 도울 의무를 갖는다, 왜 그러지? 이 사람은 ‘나의’ 친구이거나,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빚을 갚고, ‘나의’ 약속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제약(금지) 역시 행위자 상대성을 함축한다. 살인하지 않을 의무는 살해될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형식인 것은 아니다. 규제는 내가 비록 더 나쁜 일,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살해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지라도 자신이 살해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결과주의에 대한 행위자 통합성 비판

윌리엄스는 결과주의가 왜 행위자의 통합성을 체계적으로 저해하는 지를 설명하기 위해 결과주의의 특징들에 먼저 주목한다. 그는 결과주의를 칸트주의가 포함될 수 있을 만큼 너무 넓게 해석하거나 쾌락과 행위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너무 좁은 의미로도 해석해서도 안된다고 제안한다. 우리가 만일 결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사건의 상황과 행위간의 상호관계, 좀더 구체적으로, 행위의 옳음의 개념에 주목할 것을 지적한다. 그는 직접 결과주의 형식인 행위공리주의에서 옳은 행위의 핵심은 ‘극대화’라고 밝힌다. “옳은 행위는 행위자에게 가능한 행위들 중에서 본래적 가치를 무엇으로 간주하는 시스템이건 간에, 본래적 가치를 가장 많이 결과할 수 있는 행위이다”(B.Williams : 23).

이러한 견지의 결과주의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직접 초래된 사건의 상태와 다른 행위자의 개입에 의해 일어난 상태를 구분하지 않는다. 결과주의는 궁극적으로 결과된 사건의 상태에만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각 행위자는 스스로 초래한 사건만큼이나 막지 못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된다(B.Williams : 31). 만일 내가 결과주의자로서 자임한다면, 내가 행위 X를 했을 경우 발생될 결과  $O_1$ 과 X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될 결과  $O_2$ 를 알면서, 그리고  $O_1$ 이  $O_2$ 보다 더 나은 결과임을 인정하며, 행위 X를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야기된 결과  $O_2$ 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행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바로 공리주의의 소극적 책임론의 핵심이다. 행위의 책임이란 반드시 어떤 행위가 선행하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일 수 밖에 없음에도, 행위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한 사건의 결과된 상황에서 행위자 ‘내’가 직접 초래한 결과와 그 상황의 관련된 다른 행위자로 인해 초래된 결과 사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주의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로 인해 초래된 부정적 결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

윌리엄스는 이러한 소극적 책임론이 결과주의의 극단적 공평성(impartiality)을 보여주는 것이자, 실제세계에 인과적으로 개입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추상화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이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를 윌리엄스의 짐(Jim)의 예를 통해 논의한다면(B.Williams : 34)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짐의 사례는 윌리엄스가 결과주의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안한 가상상황이다.

남부 미국의 한 도시에 가게된 짐은 광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게된다. 그들

은 그곳의 주민인 인디언들이다. 그들은 반란군이 시위와 저항을 하는 일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됨을 보여주기 위해 처형될 사람들이었다. 반란군 진압의 총대장인 페드로는 짐을 발견하고(짐은 외지의 유명인사이다) 짐에게 만일 짐이 그들 중 1명을 죽인다면, 나머지 19명을 살려주고, 만일 짐이 그 1명을 죽이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20명 모두를 죽이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20명의 인디언들은 짐에게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간청한다. 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일까? 짐에게는 두 가지의 행위 선택지가 있다. 그는 1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1명을 죽인다면 19명을 살릴 수 있겠지만, 바로 그가 무고한 1명을 죽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평소의 신념에 따라 살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 선택은 20명이 죽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주의자라면 두 선택지 중 당연히 옳은 행위란 짐이 1명을 죽이는 행위일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결과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20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이 죽는 것이 더 나은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만일 짐이 1명의 인디언을 살해하길 거부했다면, 짐은 죽게된 19명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일까? 예를 들면, 살인을 거부한 짐에게 후일 19명의 살해된 인디언의 가족들은 ‘너는 그러한 죽음들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라는 원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결과주의가 정확히 인디언들이나 마찬가지로 죽게된 19명의 책임을 인정한다는데 있다. 만일 짐이 결과주의자라면, 그가 평소 어떤 가치관과 삶에 대한 태도를 가졌다해도, 1명을 살해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이었음에도, 그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그는 발생한 19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이러한 소극적 책임론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짐이 만일 1명을 살해하길 거부해서 19명이 추가로 죽었다해도 그것은 짐의 선택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게된 것이 아니며 짐의 선택과 19명이 죽는 결과 사이에 인과적 연관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윌리엄스는 지적한다.

공리주의는 바람직한 결과를 극대화하라는 일반적 과업(*general project*)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개별행위자이다. 따라서 일반적 과업은 각 행위자의 개인적 과업을 전제하게 된다. 바람직한 결과의 도모라는 일반적 과업은 부분적으로 각 개인적 과업의 최대한 조화로운 실현으로 구성될 것이다. 만일 개인적 과업이 없다면, 공리주의의 일반적 과업은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하고 공허하게 될 것이다(B. Williams : 44). 그렇다면 결과주의적 행위자는 개인적 과업의 추구하고 동시에 일반과업의 수행을 목표하게 된다. 문제는 일반적 과업 수행의 경우, 그가 어떤 개인적 과업을

가지고 있는 지에 좌우되기보다 그가 직면한 상황에 어떤 과업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에 따라 좌우된다. 예를 들면, 위의 사례의 짐이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베푸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의사였다면, 페드로는 짐의 일반적 과업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과업마저도 좌절시킨다. 확실히 짐이 1명을 살해하길 거부해서 19명의 죽음이 야기 되었다 해도, 그 결과는 페드로에 의한 결과이지 짐이 직접적으로 야기한 결과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결과주의자로서의 짐의 일반적 과업은 저항군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 주민을 살해하는 과업을 갖는 페드로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페드로가 적어도 살인하지 않겠다는 신념이나 과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에서의 짐의 일반적 과업의 성과(짐이 지게 될 책임의 범위나 유형)는 사뭇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결과주의가 타인의 과업추구에 의해 형성된 인과구조에서 최선의 결과에 따라 행위할 것을 요구하고, 막지 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면, 그것은 행위자에게 행위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B.Williams : 48).

만일 결과주의자로서 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개인적 신념이나 의사로서의 과업을 포기하고, 그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1명을 살해한다면, 그의 행위는 진실로 자신의 신념과 과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개인적 관점에서 최선이라고 평가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행위결정은 자신이 가장 동일시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과업과 태도나 신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결국 결과주의는 행위자로 하여금 그의 행위의 근원을 그 자신으로부터 소외(alienation)시키고 단지 결과주의가 요구하는 선의 극대화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자가 일관되게 결과주의적 시각을 유지한다면, 그는 개인적 관점에서의 신념이나 과업의 도덕적 중요성과 비개인적 관점에서의 신념이나 과업의 도덕적 중요성 사이에서 분열될 수 밖에 없고(S.Seffler, 1982 : 8-9), 그 결과 통합성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 Ⅲ. 행위 결과주의의 대응과 한계

#### 1. 쾌락주의의 역설, 소외 그리고 간접 행위 결과주의

윌리엄스의 결과주의 비판에 가장 탁월한 간접 행위결과주의의 대응으로서 평가되는 것은 바로 레일톤의 논변이다. 레일톤은 윌리엄스의 통합성 비판에 맞서 결과주의를 옹호하지만 객관적(objective) 결과주의를 새롭게 제안한다. 객관적 결과주의는 윌리엄스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직접 결과주의와는 다른 간접 결과주의로 평가되고 있다. 맥노턴(D.McNaughton)에 따르면, 직접 결과주의와 간접 행위 결과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준거는 바로 행위자들이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필연적으로) 결과주의

적 옳음의 개념을 따르냐에 있다. 직접 결과주의가 매 상황에서 최선의 행위, 즉 쾌락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해야하는 것과는 달리 간접 결과주의는 때때로 극대화가 아닌 결정을 따를 수 있으며, 때로는 비결과주의적 결정과 행위를 인정한다(D.McNaughton, 1998a : 604-605).

레이튼이 직접 결과주의로부터 간접 결과주의로 전환하게 된 주된 동기는 바로 쾌락주의의 역설(Paradox of Hedonism)을 줄이는데 있다. 쾌락주의의 역설이란 행위자가 삶의 유일한 궁극목적으로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행위자는 특정한 관계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을 수단적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관계나 헌신을 방해받게 되고, 종국에는 자신의 행복을 덜 염려하고 덜 수단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보다 행복해지지 않게됨을 말한다(P.Railton : 100). 레이튼은 그러한 쾌락주의의 역설은 매 순간 자신의 행복을 최적으로 극대화할 행위만을 하는 주관적(subjective) 쾌락주의자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 본다. 반면 객관적 쾌락주의자라면 최선의 행위에 기여하는 행위과정을 따라야한다는 기본노선을 같이하지만 행위의 선택시 때때로 행위자가 행위의 쾌락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각있는 쾌락주의자라면 애정과 헌신은 행위자의 삶을 형성하는데 핵심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매순간 재평가나 이차적 계산에 따라 행위하거나 그 계산들에 압도되지 않고, 때때로 이기주의적 계산을 잊거나 애정과 헌신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경기 내내 끊임없이 승부에 집착하는 테니스 선수보다 경기 그 자체를 즐기는 테니스 선수가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P.Railton : 102). 주관적 결과주의와 객관적 결과주의 역시 주관적 쾌락주의와 객관적 쾌락주의와의 관계와 유사하다. 주관적 결과주의는 행위선택에 직면할 때마다 행위자에게 가능한 행위 중 가장 선을 증진하는 행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위한다. 객관적 결과주의 역시 주관적 행위 결과주의와 마찬가지로 선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행위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결과주의 계산에 따라 극대화된 행위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때때로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무나 덕스러운 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음을 허용한다(P.Railton : 113-114).

레이튼은 이러한 객관적 결과주의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사는 세련된(sophisticated) 결과주의자라면 윌리엄스의 행위자 통합성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그는 행위의 근원인 행위자의 과업이나 신념, 태도들로부터 소위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도전한다. 항상 소위가 나쁜 것은 아니며 우리가 모든 소위를 극복하길 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P.Railton : 106). 개인의 과업이나 욕구들, 관계들에 대한 소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무나 책무는 마땅히 있어야할 감정이 사라졌을 경우, 예를 들면, 사랑이 식고 친구나 가족에 대해 화가 났을 때,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사 그러한 감정이 적절하게 있다해도 우리는 그러한 감정에 대해 거

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한 거리두기(소외)는 행위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나 관계나 신조라 해도 필요하다. 윌리엄스가 삶의 형태를 틀 지워주는 근본과업으로부터의 소외가 행위자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면, 레일톤은 그러한 소외는 바로 자율성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우리의 근본과업은 어린 시절에, 특히 가족에 의해, 소속된 계층과 문화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근본과업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일은 소외를 경험하는 일이 되며, 때로 그 소외의 결과로 자신의 과업을 새로이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과업들이 검토를 통과했다면, 그 과업들은 자신의 신조로 확고해지고 통합된 삶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한번도 소외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율성을 상실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P.Railton : 107-108).

이렇듯 레일톤이 결과주의가 행위자와 행위의 근원간 소외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소외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지만 윌리엄스가 비판한대로 행위공리주의자로서 사는 일은 때때로 너무 많은 부담을 질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결과주의의 옳음의 기준이 선의 극대화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소극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결과주의는 행위자의 기본적 관계나 헌신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덕이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분열적이 될 것인지는 세계의 상태가 얼마나 나쁘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위할 지, 다른 행위자의 직관이 어떠한 지에 좌우된다(P.Railton : 122). 따라서 사회정치체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도덕적 요구가 우리의 삶을 분열시키고 행위로부터 행위자를 소외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레일톤은 주장한다. 결과주의 이론에 따라서 소극적 책임을 수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세계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사회정치체도를 지원하는 문제이다. 물론 사회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부 개인은 자신의 과거의 과업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과업을 발견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소외를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레일톤의 결과주의의 옹호는 이렇듯 윌리엄스의 소외라는 비판에 반론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적극적으로 행위자가 개인의 관심사를 넘어서서 왜 비개인적 관점을 채택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타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저야만 하는 지에 대한 결과주의적 관점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그는 삶의 의미나 도덕의 의미를 전개하는 철학자들이 흔히 지나치게 개인적 관점에서 혹은 구체적 삶과 유리된 추상적 자아를 상정한 채 도덕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을 지적한다. 그는 노직(R. Nozick)처럼 도덕의 토대를 전적으로 개인적 삶의 의미에서 발견하려는 시도나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일이 세계의 존재들을 온전히 합리적 존재로서 정언 명령체계에 따르는 일처럼 진술하려는 시도들이 각기 한편에서는 너무 개인적 자아이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이



고 추상적 자아를 상정한다고 비판한다(P.Railton : 129). 그에 따르면, 도덕의 출발점은 사회에 근거하고 있는 개인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양한 관계와 정체성을 지니는 개인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할 때 윌리엄스가 말하는 소외되지 않은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개인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관점을 넘어선 다양한 관계들이며 이러한 관계는 자신의 친근한 관계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 종교적 연대들로 확장될 수 있다(P.Railton : 131-133).

그렇다면 ‘나는 왜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하는 걸까’와 ‘왜 나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간에 큰 간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P.Railton : 131). 자아에 대한 관심과 자아정체감이 중요하다면, 자아와의 세계와의 연대를 이루게 하는 타인과 세계에 대한 관심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따라서 도덕을 준수하는 것은 삶을 가치있게 하는 개별적 헌신, 개인적 과업이나 관계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을 함의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대응을 말한다. “물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일반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윌리엄스가 비판한 것처럼 일반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개인적 관점이 있음에 도전했다.” 그가 제시하는 바처럼, 우리는 개인적 관점과 비개인적 관점을 왔다갔다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설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할 것이다.

## 2. 레일톤의 간접 행위 결과주의적 대응의 한계

행위자 통합성에 대한 레일톤의 결과주의적 대응은 한편으로는 소외와 역설을 줄이는 간접 결과주의로 이론을 수정하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이론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비개인적 관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다. 개인적 관계나 헌신, 개인의 과업에 매몰되지 않고 비개인적 관점으로 나아가고, 주관적 견지에 국한되지 않고 객관적 견지로 나아가는 것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행위하는 것에 중요한 준거지점이 될 수 있다. 도덕에서의 비개인적 일반적 관점의 중요성은 비단 레일톤의 주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파핏(D. Parfit) 역시 각 행위자가 개인이 지니는 특수한 의무에만 근거하여 행위할 경우의 자멸적임을 보여주며, 그러한 자멸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집합적 결과주의적 관점을 취할 것을 입증하였다(1988). 네이글(T.Nagel) 역시 도덕적 진리를 발견하고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짓는다. 그는 특히 윤리학은 우리의 개인적 자신을 넘어서 공평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할 것을 요구함을 부분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1988 : 169-170).

레일톤이 행위자 중심의 독립성과 개인성에 입각한 비판에 대항해서 행위자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비개인적 관점의 중요성을 옹호한다해도, 레일톤의 대응은 주요한 논쟁거리를 담고있다. 무엇보다 레일톤이 옹호하는 세련된 결과주의가 비록 행위자 통합성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해도 과연 그러한 간접 결과주의가 윤리이론으로서 온전히 정초될

수 있는가의 반론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간접 결과주의는 행위자가 때때로 결과주의가 추구하는 최선의 상황, 즉 선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이 말은 간접 결과주의 이론 안에서 행위자가 개별 의사결정의 순간에 결과주의적 사유를 억압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간접 결과주의의 이러한 특성은 행위자의 동기와 정당화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정당화와 동기를 분리하여 응수하는 전략은 건전한 도덕 이론의 특징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 노출된다. 롤즈는<sup>2)</sup> 간접 공리주의의 옳음의 개념은 공공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J.Rawls, 1972; S.Scheffler : 46). 공공성의 조건은 모든 사회여건에서 진정한 윤리이론으로서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론자체를 침해하지 않고 공적으로 널리 공포될 것을 말한다. 만일 간접 결과주의 이론 내에서 행위자가 비공리주의적 방식으로 행위할 것을 권장한다면, 그것은 그의 이론이 도덕이론으로서 공적으로 인정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간접 결과주의가 공공성의 조건을 위배한다는 비판은 일견 이론의 심각한 결함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레일톤은 그러한 조건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결과의 견지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이론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의미없는 반론이라고 일축해 버린다(P. Railton : 115).

하지만 정당화와 동기를 날카롭게 구분하고 비공리주의적 동기와 신념을 허용하는 간접공리주의자는 윌리엄스의 '공리주의의 독자적 공헌(distinctive contribution)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을 쉽사리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공리주의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고, 최선을 위해 행위할 것만을 요구한다면, 나는 공리주의가 사라졌으며, 잔존한 입장은 공리주의라 부를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공리가 전지구적으로 합산될 수 있다면, 비록 누구도 공리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초월적 관점에서 최대로 극대화된 총 공리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극대화된 총 공리로 인해, 실제로 공리주의를 수용할 사람이 거의 없거나 있다해도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공리주의를 수용할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 이성적이다. 만일 그 점이 옳으며 세상에서 공리주의가 어떤 독자적 특징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초월적 관점에서 총합의 계산뿐이라면, 나는 논의상

2) 롤즈가 직접적으로 레일톤의 글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레일톤은 롤즈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레일톤은 롤즈가 비판하는 간접결과주의(공리주의)의 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윌리엄스 역시 레일톤의 글이 나오기 이전의 간접공리주의에 대해 비판하였다. 롤즈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윌리엄스의 아래의 비판은 레일톤에게 해당된다. 레일톤은 간접결과주의를 비판한 롤즈와 윌리엄스의 논지를 의식하며 그의 글에서 이들에 직접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한 이론의 경우 공리주의로 수용될 수 없음을 보여줄지 아니면, 누구도 그 점을 수용해서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남겨둘 것이다(B. Williams, 1973 : 135; S.Scheffler : 49).

윌리엄스의 이러한 비판은 동기와 정당화를 구분하는 공리주의의 대응을 취약하게 만든다. 정당화와 동기를 확고하게 분리했을 경우 통합성의 비판을 피할 수 있지만 독자적 이론의 취약성을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화와 동기를 분리시키지 않을 경우 통합성의 비판에 해당되는 딜레마 상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레일톤은 간접결과주의가 삶의 중요한 순간의 의사결정에서 행위를 안내하지 못하는 점을 윌리엄스가 지나치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한다(P.Railton : 115). 세플러 역시 윌리엄스의 비판에 대한 결과주의 반론의 타당성을 지지한다(S.Scheffler, 1982 : 50). 만일 결과주의가 옳은 행동에 대한 이론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 즉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그른 지의 일반적 설명을 제공한다고 인식한다면, 정당화와 동기의 구분이 이론의 큰 결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진리와 수용의 권장할만함(advisability of acceptance) 간의 명백한 구분은 현대의 많은 논쟁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핵무기를 조사해야할지 혹은 유전자 조작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그러한 구분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 없다. 많은 다른 비도덕 영역에서의 행해지는 구분을 결과주의는 도덕의 영역에서 적용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윌리엄스의 비판이 날카로운 반격이었음에도, 그러한 반격이 다소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간접 결과주의가 자멸적임(self-defeating)을 보여주거나 치명적 결함을 밝혀준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결과주의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무엇보다 설사 간접 결과주의가 개인의 과업이나 신조나 태도를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개인관점의 독립성을 고려할 여지를 주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제로는 충분히 개인의 관점의 독립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S.Scheffler, 1982 : 56). 세련된 결과주의자라 할지라도 집합적 복지와 개인의 권리, 정의 등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결과주의적 행위자는 여전히 최선의 결과를 위해 무고한 타인의 권리나 정의가 침해당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여기서 제약의 핵심을 차지할 개인적 권리들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엄격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련된 결과주의자라 하더라도 결과주의의 행위자 중립성과 가치의 비교가능성, 그리고 극대화 개념만이 있는 한, 개인의 독립성을 결코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 다른 의심은 간접공리주의 이론의 새로운 정당화부담에 대한 것이다. 행위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최선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만일 동

일한 상황에서 모두 세련된 결과주의를 자처하는 행위자들이 한편은 직접적으로 선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다른 한편은 극대화 하지 않는 행동을 선택 하였다면, 간접공리주의는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가? 행위자가 최선의 결과가 아닌 차선의 결과를 선택할 수도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간접공리주의가 비록 쾌락의 역설의 난제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상이한 옳은 행위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를 해야 한다는 이론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 IV. 세플러의 혼용이론

행위자 통합성에 대한 결과주의 진영내의 반론이 비결과주의적 개념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결과주의의 수정으로 이루어졌다면, 혼용이론은 결과주의적 이론에 비결과주의적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응이다. 앞서 결과주의적 대응을 논의하면서 행위자 중심 규제의 비결과주의적 개념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행위자 중심 규제(agent-centered restriction)와 행위자 중심 특권(agent-centered prerogative)의 성격을 규명하며, 엄격한 행위자 중심 규제가 아닌 행위자 중심 특권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행위자 중심 규제에 대한 비판과 행위자 중심 특권

행위자 중심 규제와 행위자 중심 특권은 비결과주의자의 도덕적 직관에 대한 반응이다. 양자는 앞서 제시했듯이 사기, 살인, 폭행, 고문과 같은 행위의 금지와 같은 상식적 직관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행위자 중심의 규제는 비도덕적 행위를 수행한다면 최선의 상황을 결과할 수 있을 때조차 행위자에게 비도덕적 행위를 수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규제이다. 따라서 행위자 중심 규제는 의무론적 개념으로 최선의 상태에서부터 최악의 상태를 서열화 하는 행위자와 무관한 원칙이 있음을 부인하는 효과를 지닌다. 행위자 중심 규제와 행위자 중심 특권이 모두 비결과주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지만 두 개념간의 비대칭성(asymmetry)이 있다. 그것은 가능한 이론적 토대를 탐색하는데 있어 후자가 전자보다 쉽고 직관적 호소력을 지닌다(S.Scheffler, 1982 : 5-6).

문제는 과연 이러한 행위자 중심 규제가 상정하는 것처럼 절대적이어서 결코 침해되는 안되는가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자 중심 규제의 정당화 준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이다. 앞서의 윌리엄스의 사례에서 1명을 죽임으로써 19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살인금지라는 행위자 중심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지이다. 만일 행위자 중심 규제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설사 19명이 살해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1명이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고수할 것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하는가’의 질문에 정당화하기 어렵다. 한가지 정당화가능성은 바로 살인이라는 것은 부정적 가치(negative value)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정당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대응은 결과주의 반론에 대응하기 어렵다. 살인이 그렇게 부정적 가치를 지닌다면, 왜 19배나 더 큰 부정적 가치를 지닌 행위를 막지 않는 것인가?

한가지 가능한 대응은 노직이 사용한 전략이다. 그는 행위자 중심 규제의 일종인 부가 제약(side constraint)을 옹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위의 부가 제약은 그 근처에 개인이 목적이요 단지 수단이 아니라는 칸트적 원리가 깔려있다. 즉, 개인은 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희생되거나 이용당할 수 없다. 개인은 불가침적이다.” 하지만 세플러는 이렇듯 개인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나쁘다면, 즉 위반이 부정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위반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면, 앞서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 반론조차도 부적절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sup>3)</sup>

행위자 중심 특권과 행위자 중심 규제간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무고한 타인에게 직접적 위해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행위자 중심 특권과 행위자 중심 규제는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기왕 발생한 사건이라면 최소화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행위자 중심 특권이라면, 최소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개념은 바로 행위자 중심 규제이다. 세플러는 행위자 중심 규제를 통해 위해(危害)행위들을 완전 금지하기보다 오히려 행위자 중심 특권을 도입하여 나쁜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스캔론이 지적하듯이 행위자 중심의 도덕에만 눈을 돌려 ‘내가 무엇을 하느냐’(what you do) 가 아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what happens)에 대한 도덕적 평가로 초점을 맞춘다면 불행한 결과의 최소화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T.M.Scanlon, 1976; Scaffler, 1982 : 109).

이제껏 우리는 윌리엄스가 제기한 짐의 사례에서 나오는 살인의 문제를 다루었다. 실제로 살인의 문제가 너무도 우리의 상식적 직관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여전히 최소화 역시 인정하지 않으며 행위자 규제의 완전금지를 시인하고 싶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행위자 중심 규제의 엄격한 금지가 갖는 불합리성과 결과적 숙고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는 네이글의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당신은 인적이 없는 외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깨어나 보니 차안의

3) 노직의 권리침해의 엄격한 금지에 대한 반론으로 세플러처럼 제약의 위반에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며 집합적 관점에서 비합리적임을 보여주는 비판도 있지만 노직이론 내에 비밀관성을 지적하는 반론도 있다. 필자는 노직에 대한 반론의 경우 비밀관성의 반론이 보다 강한 비판으로 생각된다. 노직이 칸트 이론에 호소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정통 칸트주의의 입장과는 차이는 있다. 이러한 차이를 지적하며 노직의 논변의 결함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라즈의 비판을 참고하시오(J.Raz : 274).

친구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당신은 인근 농가로 달려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친구들을 호송하기 위해 농가의 차를 빌려줄 것을 부탁했지만, 당신의 설명을 믿지 않고 농가의 여주인은 황급히 방으로 숨어버리고 당신 곁에 여주인의 손자만 남아 있었다. 만일 당신이 그 아이의 팔이 비튼다면 아이의 비명에 놀라 여주인이 방에서 나올 것이고 그 틈에 차를 빌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에서 친구들은 죽어갈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T.Nagel : 156)

우리가 이런 네이글의 사례에서 무고한 아이의 팔을 비트는 것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상식적 제약을 위반한 것이며, 나쁜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아이의 팔을 비틀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호송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어갈 친구들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행위자 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엄격히 제약을 준수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약의 위반보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이전의 사례보다 왜 제약의 위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지에 강한 의문을 갖게된다. 앞서 결과주의보다 의무론의 규제나 제약들이 상식적 직관의 견지에서 보다 호소력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규제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한다면, 그러한 호소력은 역설적이게도 사라지게 된다.

제약의 위반이 그러다는 상식적 직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실제적 한계들을, 예를 들면, 잘못된 판단이나 인지적 왜곡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객관적이고 비개인적 기준이나 가치라는 미명 아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할 마땅한 권리나 이익들을 침해당해왔던 인간의 경험들이 일관된 규제나 행위자 상대적 제한의 준수가 더 바람직하다는 상식적 직관을 옹호하게 된 배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충분히 인정한다해도 규제의 엄격한 준수라는 상식적 직관 역시 그 자체로 절대적이기 보다 결과주의적 견지에서 요구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듯 우리가 결과주의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행위자가 제약이나 도덕적 이유, 권리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위반되어서는 안되는 제약이기 때문에 발생될 더 많은 악의 최소화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 경우 소극적 책임에 대한 이전 논의에서처럼 행위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 관점을 뛰어넘어 공평하고 비개인적 관점을 취하고 악을 극소화하려는 일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여지는 있다.

## 2. 행위자 중심 특권, 결과주의 그리고 혼용이론

행위자 중심 특권은 행위자 중심 규제와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행위해야 한다는 점을 거부하는 기능을 한다. 특권은 특정 한계 내에서 어떤 행위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지라도 자신의 과업과 신념에 에너지와 관심을 쏟는 것을 허용한다(S.Scheffler, 1982 : 17). 만일 각 행위자가 최선의 결과에 대한 무제한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결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행위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때 그러한 결과를 도모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일이다. 행위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행위할 것인 지에 대한 답은 (예상되는) 최선의 결과에서 산출할 선의 양과 그 결과를 위해 행위자가 치러야 할 희생의 크기에 달려있다. 좀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유효한 행위자 중심 특권은 각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비례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할당한다. 그러므로 행위자 중심 특권은 행위자가 최선이 아닌 결과를 선택하고 그 결과가 발생되도록 행위하는 것을 허용한다(S.Scheffler, 1982 : 19).

하지만 행위자 중심 특권은 행위자 중심 규제와는 달리 행위자가 최선의 결과를 도모할 수 있음을 열어둔다. 더 큰 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을 희생하고 최선을 위해 행위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S.Scheffler, 1982 : 24). 최선을 위해 행위했다 해도 행위자 통합성의 비판을 비껴간다. 동시에 행위자 중심 특권을 인정하기에 비개인적 관점에서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행위하지 않는다 해도 허용된다. 하지만 행위자 중심 특권은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비결과주의 개념인 행위자 중심 규제는 통상 모든 상황에서 해를 막을 의무(the duty to prevent harm)보다 위해 금지(the duty not to harm)를 우선시 해서, 직접 해를 가한 행위에만 책임을 두고 막지 못한 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성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러한 정당화의 근거는 모호하다(S.Scheffler, 1982 : 25).<sup>4)</sup> 이전 절에서 네이글의 사례의 행위자의 경우 이러한 우선성과 막지 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상식적 직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했다.

행위자 중심 규제가 결과주의를 거부하는 것인 반면, 행위자 중심특권은 결과주의적 이론과 양립가능 하다. 셰플러는 행위자 중심특권을 결과주의 내에 도입함으로써 윌리엄스의 행위자 통합성 비판을 무력화하고 결과주의의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라는 기본정신을 유지하는 혼용이론을 제시한다. 정확히 혼용이론은 행위자 중심 특권을 통합함으로써 결과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행위자 중심 규제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결

4) 셰플러에 따르면 행위자 중심 특권은 그 정당화를 제시할 수 있다. 위해 금지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위해행위를 행위자에게 도덕적 의무로서 요구하는 일이 행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되기 때문이다. 앞서의 특권에 대한 설명처럼, 행위자가 자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행위한다면 허용가능하며, 동시에 행위하지 않는다 해도 그런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주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것은 최선의 상태를 도모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생각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혼용이론은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는 행위를 항상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결과주의와 다르다. 그러나 최선의 결과를 항상 할 수도 있다는 건전한 생각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결과주의 개념들과 같다(Scheffler, 1982 : 5-6).

## V. 결 론

결과주의는 비록 개인의 쾌락이나 행복 등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행위자를 동등하게 간주함으로써 행위자 중립적 견지에서 옳음의 개념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옳음의 개념은 행위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부과하기에 결과주의적 행위자는 필연적으로 그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신념이나 태도, 관계, 과업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그들로부터 행위자는 소외되고 그의 인격의 견지에서 판단과 행위를 설명할 수 없게된다는 비판을 받게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해서 결과주의자는 결과주의가 개인의 독립성을 체계적으로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요한 가치로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간접 행위공리주의나 혼용이론을 제안했음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간접 행위공리주의의 탁월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대화의 개념만을 인정하고 있기에 자칫 개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이유로, 혼용이론을 보다 나은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혼용이론이 행위자 통합성의 관점에서 보다 탁월한 반론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독자적 윤리 이론으로서의 얼마나 좋은 이론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두고자 한다.

행위자 통합성의 논쟁은 결과주의에 대한 찬반양론의 논쟁일 수도 있지만 이면에는 윤리학에 전제되어왔던 객관성이나 공평성에 대한 반성과 도전이기도 하다. 결과주의가 행위자에게 비개인적 관점에서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면, 의무론(권리이론이나 상식의 도덕)은 행위자 상대적 이유들이 개인 삶에서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도덕의 영역 내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인간이 공평성과 객관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자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평성과 객관성의 무한한 추구가 진리에 근접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인간의 본래적 경향성들을 본디 그릇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하나로 묶어버리려는 시도들이 결코 사라질 수 없겠지만 공허할 뿐이라는 점을 위의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이글이 지적하고 있듯이 윤리학에서 완전히 주관을 제거하려는 일은 물리학에서 사실을 제거하려는 일이나 다름없다(T.Nagel : 170).

하지만 개인의 개별성만큼 비개인적 관점과 객관성은 윤리학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단지 주관적이며 개인적 자아만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객관적 합리적 자아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개인적 이유나 가치와



개인적 관계들은 비개인적 관점에서조차 여전히 그 중요성이 수용될 수 있기도 하다. 비개인적 관점이나 객관성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 관점과 행위자 상대적 이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주관주의라는 비난을 쉽게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론은 도덕이나 윤리이론으로 적합지 않게 된다. 결국 인간을 위한 타당한 도덕이론이라면 개인적 관점과 비개인적 관점간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윤리의 차원에서보다 정치도덕이나 정치윤리의 영역에서 더욱 부각된다. 상이한 개인적 정체성과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며 각 개인이 자율적 삶을 살 것을 사회가 권장한다해도, 사회를 이루어 살 때는 단일한 제도 아래에서 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의 이론은 우리가 살아야할 제도의 이론을 요구한다. 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한 행위의 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윤리는 정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이론은 비개인적이고 단일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이한 인간들을 추상화하거나 단일한 기본 본성을 전제하여 원칙을 제시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단일하지 않은 인간본성을 가진 실제 세계의 각 행위자에게 그러한 정치이론은 불공정한 이론이 아닐 수 없다(T.Nagel : 170-171). 그래서 비록 단일하지만 모든 상이한 행위자에게 공정한 사회원칙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정치도덕의 경우 보다 개인의 자율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독립성과 객관성과의 조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Jollimore T. A.(2001). *Friendship and Agent- Relative Morality*. New York : Grand Publishing Inc.
- Larmore C.E.(1987). *Patterns of Moral Complexit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Naughton D.(1998a). Cosequentialism. In Craig, E.(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cNaughton D.(1998b). Deontological Ethics. In Craig, E.(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agel T.(1988). Autonomy and Deontology. In Scheffler, S.(eds).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fit D.(1988). Is Common-Sense Morality Self-Defeating? In Scheffler, S.,(eds)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ilton, P.(1988). Alienation, Consequentialism and the Demands of Morality. In Scheffler, S.(eds)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z, J.(1986). *The Morality of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effler, S.(1982). *The Rejection of Consequentialism: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Underlying Rival Moral Concep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effler, S.(eds) (1988).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B.(1988). Consequentialism and Integrity. In Scheffler, S.(eds).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t;Abstract&gt;

## Act Consequentialism and Integrity

Park, Hyo-Chong\* · Son, Kyung-Won\*\*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 for ethics in Korea by paying attention to controversies about act consequentialism. Consequentialism builds on what may seem to be simple truism, namely that morality is concerned with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all. It judges the rightness or wrongness of actions in terms of the value of their consequences. Its most popular version is act-consequentialism, which claims that, of all the actions open to the agent, the right one is that which produces the best result. Act consequentialism can be criticized as being excessively demanding. Bernard Williams argues that utilitarianism erodes the integrity of individuals by virtue of its strong doctrine of 'negative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the weakness of consequentialism, there are two responses that could modify a consequentialist conception in such a way as to clearly accommodate the objection dealing with personal integrity. The first one is objective consequentialism Peter Railton suggested. He maintained that in order to live morally, individuals must act in terms of a personal perspective as well as impersonal one. The second one is Samuel Scheffler's idea of a agent-centered prerogative. He suggested that one response to the problems Williams raises about the impersonality and rigorism of consequentialism could be a departure from consequentialism which would recognize as a fundamental moral principle an agent-centered prerogative, roughly to the effect that one is not always obliged to maximize the good, although one is always permitted to do so if one wishes.

We as moral educators or moral philosophers have to consider seriously whether the special, personal perspective of agency has legitimate significance in determining what people have reason to do. It is worth emphasizing that we are constituted by a subjective self as well as an objective one. Usually we tend to believe that ethics is more than the purification and intensification of internal human perspectives. It also requires a detachment from particular perspectives. But this study argues that it would be a mistake to try to eliminate a perspective from our conception of ethics entirely.

---

\* Professor,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